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

주체 98(200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052 호로 채택

제 1 장 배안전법의 기본

제 1 조 (배안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은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배의 설계 및 건조원칙)

배의 설계와 건조를 바로하는것은 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배의 설계와 건조에서 선급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 3 조 (배의 검사원칙)

배의 검사는 배의 기술적상태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배검사를 현대화, 과학화하여 배검사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 4 조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원칙)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은 바다에서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배의 안전관리, 안전보장체계를 바로 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 5 조 (다른 나라 배의 검열원칙)

다른 나라 배의 검열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가 공화국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요구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다른 나라 배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 6 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배를 설계,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생산, 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2.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3. 해사감독 및 항운영기관
4.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조선선급을 가진 다른 나라 배

제 7 조 (법의 제외대상)

군함 및 경비용 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8 조 (배안전과 관련한 국제적교류와 협조)

국가는 배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배의 설계 및 건조

제 9 조 (배설계의 구분)

배설계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 또는 설비, 의장품의 제작을 위한 선행공정이다.

배설계에는 배의 건조설계, 개조 및 수리설계, 설비설계, 의장품설계 같은것이 속한다.

제 10 조 (배설계의 담당자)

배설계는 전문배설계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배의 설비, 의장품 같은것에 대한 설계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할수도 있다.

제 11 조 (배설계의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배설계의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충분한 세기와 불침몰성, 복원성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출을 줄이고 실리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5. 기타 선급규정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 12 조 (배설계계약)

배설계를 주문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설계기관, 기업소와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대상에 따르는 기술과제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13 조 (배설계의 단계)

배설계는 과제설계, 초기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 총화설계단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단계에 따르는 절차와 방법,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 14 조 (표준설계문건의 리용)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배설계작성에 표준화, 규격화된 설계문건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배설계심의의무)

배설계는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해사감독기관의 설계심의를 받지 않고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배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할수 없다.

제 16 조 (배설계심의신청)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가 완성되면 해사감독기관에 배설계심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배설계문건과 도면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배설계심의)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를 심의하는 경우 선급규정의 요구에 맞게 설계되었는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의 설계심의를 해당 나라의 해사법규와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한다.

제 18 조 (배설계의 유효기간)

해사감독기관은 승인한 배설계의 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배설계는 리용할수 없다.

제 19 조 (설계와 표준조작법의 요구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는 경우 설계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설비, 의장품의 설치 및 시험과 용접 같은것은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기능공만이 할수 있다.

제 20 조 (성능검사시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는 과정에 작업공정별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성능검사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및 의장품에 대한 성능검사시험은 그것을 배에 설치한 다음 하여야 한다.

제 21 조 (배설계의 수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설계를 수정할수 있다. 이 경우 설계기관, 기업소는 수정한 설계내용에 대하여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22 조 (계류 및 항해시운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가 끝나면 계류 및 항해시운전을 진행하고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23 조 (총화설계)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가 완성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총화설계를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은 다음 배소유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총화설계문건은 배소유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없다.

제 24 조 (배의 설비)

배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선급규정의 요구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및 기계장치
3. 전기설비
4. 화재방지설비
5. 구명설비
6. 항해안전설비
7. 조타, 계류, 양묘설비
8. 오염방지설비
9. 생활보장설비

10. 이밖에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설비

제 25 조 (만재잠김선의 표식)

배는 만재잠김선을 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하는 배는 만재잠김선에 관한 국제협약, 국내항해하는 배는 선급규정에 따라 만재잠김선을 표식한다.

제 26 조 (만재잠김선을 표식하는 배)

만재잠김선을 표식하는 배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하는 배
2. 길이 24m이상의 배
3. 길이 24m미만의 배로서 13명 이상의 려객을 수송하는 배
4. 이밖에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배

제 27 조 (배톤수의 제정)

배는 톤수를 제정받아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톤수제정은 배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하며 국내항해하는 배의 톤수제정은 배톤수측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다.

제 28 조 (무선설비)

국제항해하는 려객선과 총톤수 300 이상의 배는 해상조난안전체계에 따르는 무선설비를 갖추며 총톤수 300 이하의 배는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무선설비를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갖추어야 한다.

제 29 조 (발명, 창의고안의 도입)

배 또는 배설계에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새로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 3장 배의 검사

제 30 조 (배검사의 담당자와 구분)

배는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의 검사는 제조검사와 운항검사로 나누어 한다.

제조검사는 건조하는 배, 운항검사는 운항하는 배에 대하여 한다.

제 31 조 (배검사의 신청)

배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에 배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을 한다.

제 32 조 (제조검사와 운항검사)

제조검사에서는 예비검사, 공정검사, 시운전검사를, 운항검사에서는 초기검사, 년차검사, 중간검사, 갱신검사를 한다.

필요에 따라 운항하는 배에 대한 추가검사를 할수도 있다.

검사종류에 따르는 검사내용과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 33 조 (림시운항검사)

해사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하기전에 항해하려 하거나 양도 또는 검사, 톤수측정, 개조, 수리, 폐선할 목적으로 항해하려는 배에 대하여 림시운항검사를 할수 있다.

제 34 조 (다른 나라에서 배의 검사)

공화국령역밖에서 항해하고있는 배에 대한 검사는 공화국해사대표기관이 한다.

공화국해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직접 하거나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지정하는 다른 나라 검사기관이 할수 있다.

제 35 조 (배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검사에서 합격된 배에 대상에 따라 선급증서, 협약증서, 운항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주어야 한다.

림시운항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림시운항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는 배증서를 항상 갖추고있어야 한다.

제 36 조 (배검사에 대한 의견제기)

배검사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견이 있을 경우 해사감독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배검사에 대한 의견을 제기받은 해사감독기관은 제때에 료해처리하고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37 조 (배증서의 재발급)

배는 배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되었을 경우 해사감독기관에 재발급신청을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신청리유를 정확히 검토하고 배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 38 조 (배증서의 반환)

배가 실종, 침몰, 폐선 또는 판매되었거나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에는 배증서를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 39 조 (선급제정)

배는 해당한 검사를 받은 다음 구조적, 기술적, 운영적특성에 따르는 선급을 제정받아야 한다.

선급을 제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 40 조 (변경승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검사를 받은 다음 배와 배설비의 형태, 구조, 재료를 변경하려 할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검사원의 주재)

해사감독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를 위하여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는 현장에 검사원을 주재시킬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장에 주재하는 검사원의 사업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42 조 (설계기관, 제작공장, 기술봉사소에 대한 인증)

배설계기관, 기업소와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거나 그에 대한 기술봉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급규정에 따라 해사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설계하거나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제작 또는 그에 대한 기술봉사를 할수 없다.

제 43 조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수입)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자료나 견본 같은것을 내야 한다.

제 44 조 (배검사료금의 지불)

배검사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체정기관이 한다.

제 4 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제 45 조 (안전관리체계의 수립과 리행)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안전관리는 배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을 세워 항해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관리체계를 세우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 46 조 (안전관리체계수립의 내용)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안전관리와 관련한 문건과 배증서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
3. 배를 안전하게 운영할수 있는 지휘체계를 세워야 한다.
4.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성원들의 임무분담을 정확히 하고 연락체계를 기동성있게 세워야 한다.
5.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세워야 한다.
6. 비상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7. 안전관리의 요구에 맞게 배의 승선인원과 기술상태를 보장하여야 한다.
8. 내부안전관리검토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47 조 (안전관리검열의무)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정형에 대한 검열을 받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검열을 받지 않은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할수 없다.

제 48 조 (안전관리검열의 신청)

안전관리검열을 받으려는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관리검열신청서를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배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료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49 조 (안전관리검열진행)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검열체계를 바로 세우고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검열은 초기, 년차, 중간, 갱신 및 추가검열로 나누어 한다.

제 50 조 (안전관리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검열에서 합격된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하는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에는 안전관리증서를,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안전관리리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새로 운영하는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잠정안전관리증서 또는 잠정안전관리리행증서를 발급한다.

제 51 조 (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리행증서는 5 년간, 잠정안전관리증서는 6 개월간, 잠정안전관리리행증서는 1 년간 효력을 가진다.

안전관리증서는 중간검열, 안전관리리행증서는 년차검열을 통하여 그 효력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 52 조 (안전보장체계의 수립과 리행)

배와 항시설에 대한 안전보장은 외부로부터 침습할수 있는 위험을 막고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체계를 세우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 53 조 (안전보장일군의 선정)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일군을 선정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일군은 해당 자격을 갖춘 자만이 될수 있다.

제 54 조 (안전보장계획)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기록하며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건을 갖추고있어야 한다.

제 55 조 (안전보장설비의 운영)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 56 조 (안전보장검열의무)

국제항해하는 려객선, 총톤수 500 이상의 배와 항운영기관은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안전보장검열을 받아야 한다.

배와 항운영기관의 안전보장검열기준은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제 57 조 (안전보장검열신청)

안전보장검열을 받으려는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검열신청서를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배 또는 항운영기관의 자료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58 조 (안전보장검열진행)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의 안전보장실태에 대한 검열을 하고 안전보장증서 또는 잠정안전보장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안전보장증서는 배를 새로 운영 또는 구입하였거나 국적 및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발급한다.

안전보장증서는 5년간, 잠정안전보장증서는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 59 조 (항해구역의 설정)

배는 정해진 항해구역안에서 항해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크기와 속도, 항해감당력 같은것을 고려하여 배에 항해구역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 60 조 (항해안전규정의 준수)

배는 사명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며 인명안전규정, 충돌예방규정과 해상짐의 배치, 보관, 취급, 수송과 관련한 안전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 5 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

제 61 조 (다른 나라 배의 검열의무)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공화국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준수정형에 대하여 해사감독기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 62 조 (다른 나라 배의 입항에 대한 통지)

배대리기관은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오는 경우 그 배에 대한 검열을 제때에 할수 있도록 해사감독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63 조 (해사감독기관의 검열권한)

해사감독기관은 공화국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를 엄격히 검열하여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요구에 따라 항해감당력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이 경우 국제해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배에 대하여서는 공화국해사법규에 따라 조사한다.

제 64 조 (다른 나라 배의 결함에 대한 대책)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의 검열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퇴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상태나 항해감당력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할 때까지 출항을 금지시킬수 있다.

제 65 조 (다른 나라 배의 결함퇴치후 검사)

다른 나라 배는 결함을 퇴치한 다음 해사감독기관에 신청하여 해당한 검사를 받을수 있다.

제 66 조 (다른 나라 배의 검열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통보 및 처리)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의 검열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국제해사기구와 지역별 외국배검열기구, 배가 속한 나라에 통보하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67 조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배안전사업과 관련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68 조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안전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 69 조 (선급규정의 작성 및 지도)

내각과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선급규정을 비롯한 해사규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그 집행에 대한 지도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 70 조 (배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배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배안전사업에 대한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71 조 (다른 나라 배의 억류 및 벌금부과)

공화국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어긴 다른 나라 배는 억류하거나 벌금을 물릴수 있다.

제 72 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설계로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였을 경우
2.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수입하였을 경우
3.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배 또는 배설계에 도입하여 배안전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배의 검사와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받았을 경우
5. 정해진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였거나 만재잠김선규정, 인명안전규정, 충돌예방규정, 해상집안전규정을 어기고 항해하였을 경우
6. 배설비, 무선설비를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고 항해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설비, 의장품의 형태, 구조를 변경시켰을 경우
8. 배증서를 위조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증서를 가지고 항해하였을 경우
9. 안전관리와 안전보장검열에 합격되지 못한 배를 운영하였을 경우
10. 다른 나라 배의 입항통지를 제때에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검열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공화국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지키지 않아 배가 다른 나라에 나가 대외적권위를 훼손시켰거나 국가적손실을 주었을 경우

제 73 조 (형사적책임)

제 72 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